

#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설치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 (위탁운영)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- 추진 필요성
  - 위탁업무가 관리·운영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관리 사무로,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·운영 필요

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운영관리
  - 체험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
  - 위탁시설 장비 등 유지·관리
  - 체험시설 이용객의 안전, 편의도모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연면적 1,200㎡(239-33번지 600㎡, 240-144번지 600㎡)
- 시설규모: L 18.45m × W 16.79m × H 9.03m, 지상 3층 규모
- 시설구성: 총 14개의 코스로 구성, 체험 소요시간 1시간 정도
- 수용가능 인원: 1일 최대 350명
- 부대시설: 사무실(7m×3m), 창고(6m×3m) 컨테이너 각 1동
- 토지사용기간: 토지사용 계약일부터 시설물 존치일까지

##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위탁 기간: 2024. 4. 24. ~ 2027. 4. 23.

#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

- 공개경쟁입찰: 의회 동의 후 수탁자 공개모집
  - 수탁기관 선정 시, 수탁 결과 의회 제출

#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인건비 140,000천원(군비)
  -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및 보험료 등
- 일반운영비 14,300천원(군비)
  - 사무용 비품구입, 공과금, 홍보비 등
- 예비1,000천원(군비)
  - 홍보, 마케팅에 따른 출장비 등
- 시설관리비 24,700천원(군비)
  - 기타 필요 시설물 신축 및 안전장비 추가 구입분

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직영관리	장점	○ 시설운영비 직접 집행으로 인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
	단점	○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○ 안전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○ 홍보 및 마케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체험자 모집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운영 어려움
위탁관리	장점	○ 레저스포츠 및 관광분야 전문인력 보유 ○ 안전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 가능 ○ 홍보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험자 모집 용이할 뿐만 아니라, 주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
	단점	○ 시설운영비를 위탁업체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짐
검토결과	<p>○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의 직영운영 시 시설비 직접 집행으로 인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나, 인력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, 안전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, 홍보 및 마케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체험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음</p> <p>○ 민간위탁 운영시 위탁금 운영에 있어서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나, 정기적인 결산검사로 인해 투명성 제고 가능</p> <p>○ 민간업체의 레저스포츠 및 관광분야 전문인력 보유로 인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, 안전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보다 수월함</p> <p>○ 위탁 조직 내 홍보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험자 모집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주변 체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, 관내 소재한 단체 위탁을 통해 지역주민이 운영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</p> <p>○ 위와같이 검토한 결과 관련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</p>	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< 위치도 >



< 현장사진 >



#### 나. 관계법령

- 「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
○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법인·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해당 위탁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스포츠·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스포츠·관광자원 등의 보존·관리 및 개발·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.

#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